

의안 번호	제 15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12. 12 (제 7 회)

의
결
사
항

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 출 자	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영일
제출 연 월 일	2012. 12. 12

1. 의결주문

-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지재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산학연의 상이한 입장차로 국가 R&D 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저해
- 산학연 호혜적 관계정립을 통한 협력연구 활성화 및 우리 R&D의 양적·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,
 - 산학연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(이하 “가이드라인”)을 마련하였으며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·의결을 거쳐 산학연 각 부문에 널리 보급·확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(1) 그간의 특위운영 및 주요 추진경과

- ‘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(“이하 특위”)’ 출범이후(’12.3), 7차례의 특위활동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산학연 최종안을 도출(’12.11.28)

(2)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 주요내용

- (계약서 유형) 소유권 귀속, 실시권,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을 제시하였고, 상호 협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함
 - * 상호준거로서 권장하며 사적자치의 우선원칙에 따라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
- (수익배분) 학연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수익배분 문제에 있어서 수익배분 의무화(공동소유), 수익보상 실시(기업 단독소유)에 대해 기업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명문화함

- (중소기업 등 배려)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 배려의 측면에서 수익배분, 수익보상,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의 지급시기 유예 등을 추가
- ⇒ 학연측에서 요구한 ‘수익배분·보상’ 이슈를 명문화하여 반영하였으며, 공청회, 설명회, 간담회 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 및 7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 산학연 가이드라인(안)을 도출(12.11.28)

4. 향후 계획

- (1단계)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 (‘12.12월)
 -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대외공표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‘공고’ 및 관련부처가 산학연 각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시행안내
- (2단계) 확산 및 활용 (‘12.12월 ~ ’13.2월)
 -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, 합동 설명회 추진
- (3단계) 보완 및 발전 (‘13.2월 ~ 계속)
 - ‘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(가칭, 이하“특위”)’ 구성 등을 통해,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, 가이드라인 개선 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저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
 - 수집된 의견 및 저해사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·수정
 - ‘산학연 협력연구 ombudsman(‘특위’ 위원장 겸임)’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,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 병행
 - 향후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검토

신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 [요약]

2012. 12. 12

관계부처 합동

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
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

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1. 추진배경

- 치열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적권 분쟁, 기술 융복합 추세 확산 등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핵심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
 - 그러나, 국가연구개발(R&D)外的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경우는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·연구소간에 지식재산 소유권 및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인해 협력연구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
-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질적·양적 도약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‘협력연구 협약’을 통한 협력주체간 호혜적 관계정립이 중요
 -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민관합동 ‘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’(이하 “특위”)를 구성·운영(‘12.3~)
 - * 정부는 ’09.9월부터 지경부·교과부 주도로 ‘산·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’ 수립을 추진하였으나, 성과물 귀속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고, 동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족(’11.7월)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노력을 재개
 - 산학연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 협력주체가 향후 ‘협력연구 협약 체결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(이하 “가이드라인”)을 마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·의결을 거쳐 산학연 각 부문에 널리 보급·확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(1) 특위운영 및 주요 추진경과

- ‘12.3월 특위설치 이후,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안을 심의·의결(’12.11.28)
 - 협약개선 설문조사, 공청회, 산학연 간담회·설명회 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종합하여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을 마련

< 주요 추진경과 >

- ① 제1차 특위('12.3.13) : 선행 노력 경과 검토 및 특위 운영계획 확정
 - * 특위 운영목표 : 사적 자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과 상호이익 균형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
- ② 제2차 특위('12.4.17) :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 계획 검토
- ③ 산학연 대표기관 간담회('12.5월 총 3회) : 가이드라인 초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
 - * 학계('12.5.16), 산업계('12.5.18), 연구계('12.5.22) 대표기관 간담회 개최
- ④ 제3차 특위('12.5.23) : 주요쟁점, 설문조사 중간분석결과 논의
 - 자재권의 소유, 수약에 따른 보상, 자재권 실시 및 처분, 학연의 후속연구 수행 관련 등
- ⑤ 제4차 특위('12.6.28) : 가이드라인 초안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('12.5) 결과논의
 -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6가지 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초안을 마련하고, 유형선택 기준의 간소화 등 추가 보완 추진
- ⑥ 제5차 특위('12.8.29) : 가이드라인 주요 쟁점*을 논의하고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기로 의결
 - * 유형 선택방법, 제3자 실시 시의 동의, Cross 또는 Package licensing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, 제3자 침해 확약 및 배상 등
- ⑦ 가이드라인(안) 공청회('12.9.19) : 주요 쟁점 토의 및 의견수렴(160명 참석)
 - 대부분 “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하다”는 의견 확인, 수익 배분 이견조정, 제3자 침해 정의, 유사연구 제한, 중소기업 배려 조항 추가 등
- ⑧ 제6차 특위('12.9.19) : 공청회 제시의견 추가 검토, 산학연 각 분야별 순회설명회 추진 의결
- ⑨ 산학연 순회 설명회('12.10월, 총 6회) : 공청회 의견반영(안) 의견수렴
 - * 대기업('12.10.18), 중소기업('12.10.29), 연구소('12.10.22), 산학협력단('12.10.19 : 수도권/ 10.24 : 호남권/ 10.25 : 영남권)
- ⑩ 5대기업 간담회('12.11.7) : 삼성, LG, SK, 현대차, POSCO 등 의견수렴
- ⑪ 전국산학협력단장 토론회('12.11.22) :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론, 의견 수렴
- ⑫ 제7차 특위('12.11.28) : ‘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’ 의결

(2)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(안)」 주요내용

가. 가이드라인 개요

- (수립목적) 국가 R&D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의 준거를 마련하여, 침체된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재산 창출기반을 조성
 - 산학연간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과 연계개발(C&D) 촉진을 통해 우리 R&D의 양적·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
- (수립방향) ①우리나라 R&D의 질적·양적 성장, ②협약의 실효성/유연성의 조화, ③협약 선택의 다양성, ④산학연 주체들의 상호이익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
- (적용범위) 산학,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
 -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,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,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호 준거로 활용
 - *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 협약의 경우에도 ‘가이드라인’을 준용
- (근거법령)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(기본이념),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19조(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)

나.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길잡이(계약서 유형 선택방법)

- (계약서 유형) 소유권의 귀속,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

<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>

소유권 귀속	실시권 및 수익 배분	대안으로서의 가능성	선호도
학연 단독 소유	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	(제외) 기업 수용 곤란	學研 기업
	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	유형 1	
	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	유형 2	
	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	(제외) 學研 수용 곤란	
공동 소유	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	유형 3	
	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	유형 4	
기업 단독 소유	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(인센티브)	유형 5	
	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(인센티브)	유형 6	
	수익 배분, 보상 없음	(제외) 學研 수용 곤란	

*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(계약)에 의해 선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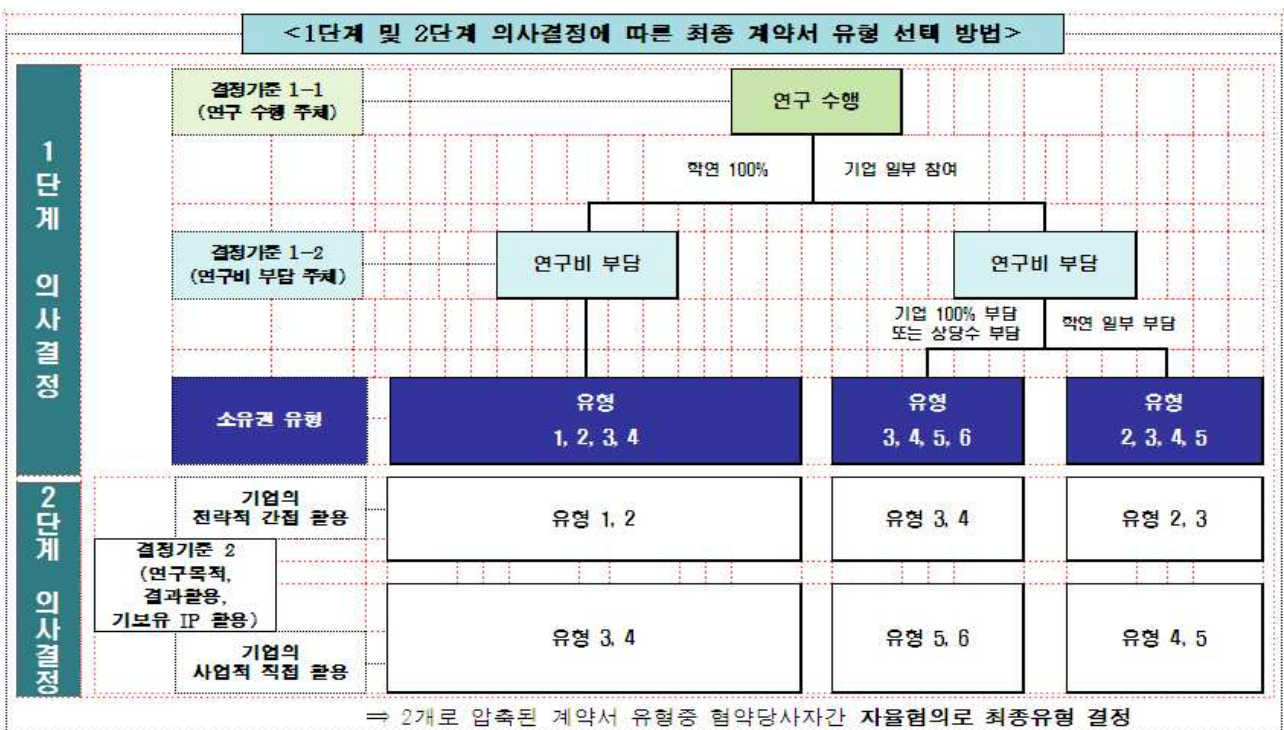
- (계약서유형 선택모델)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
 - (1단계,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) 연구수행 주체(결정기준 1-1), 연구비 부담주체(결정기준 1-2)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(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)

연구수행 주체	연구비 부담 주체	學研단독 (유형 1, 2)		공동소유 (유형 3, 4)		기업단독 (유형 5, 6)	
학연 100% 수행	기업 100%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	○	○	○	○		
	학연 부담 참여	○	○	○	○		
기업 일부 참여	기업 100%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			○	○	○	○
	학연 부담 참여		○	○	○	○	

- (2단계, 계약서 유형 압축) 연구목적, 연구결과 활용성, 기보유 지식재산(IP) 활용(결정기준 2)과 관련한 체크리스트*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,

*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“사업적 직접활용”(3~5개) 또는 “전략적 간접활용”(0~2개)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

- (최종계약서 유형결정)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 결정



다.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계약서

○ 유형별 계약서 주요 내용 비교

구분	학연단독소유		공동소유		기업단독소유	
	(유형1) 무상통상 실시권	(유형2) 유상전용 실시권	(유형3)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	(유형4)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	(유형5)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 보상(인센티브)	(유형6) 제3자 실시 보상(인센티브)
① 연구 결과 귀속	○ 일체의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학연 단독 소유	○ 일체의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학연 단독 소유	○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	○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	○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회사 단독 소유	○ 연구 결과, 지재권은 회사 단독 소유
② 연구 결과 등의 실시	○ (제3자양도) 통상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 동의 필요	○ (제3자양도) 전용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 동의 필요/지재권 제3자 양도시 학연은 회사에 우선협상권 부여	○ (제3자양도) 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 상대방 동의 필요하고,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	○ (제3자양도) 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 상대방 동의 필요하고,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	○ 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지재권 사용 가능하며,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	○ 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지재권 사용 가능하며,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
	○ (제3자실시) 통상실시권 재 실시 권 설정시, 회사는 학연의 사전 동의 필요	○ (제3자실시) 통상실시권 재 실시 권 설정시, 회사는 학연의 사전 동의 필요	○ (제3자실시) 제3자 실시시 상대 동의 필요 - 단, 학연의 非경쟁기업·지주회사 실시, 회사의 크로스·패키지 라이선싱 실시시 동의로 간주, 통보만 가능 -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 동의로 간주, 통보만 가능	○ (제3자실시) 제3자 실시시 상대 동의 필요 - 단, 학연의 非경쟁기업·지주회사 실시, 회사의 크로스·패키지 라이선싱 실시시 동의로 간주, 통보만 가능 -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 동의로 간주, 통보만 가능		

③출원 및 유지 비용 부담	○ 학연 부담	○ 학연 부담	○ 공동부담 (단, 학연부담이 곤란할 경우 기업 先부담, 수익 배분 시 상환가능)	○ 회사 부담	○ 회사 부담	○ 회사 부담
④확약 보증 및 면책	○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 ○ 소송 등 분쟁 발생시 학연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제공 ○ 분쟁해결에 대해 상호 최선의 노력					
⑤유사 연구 제한	○ 회사 동의 불필요	○ 회사 동의 불필요	○ 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	○ 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	○ 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	○ 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
⑥실시에 따른 수익배분	-	-	○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부 배분 해야함 -단, 회사의 크로스 · 패키지 라이선싱 제3자 실시시 수익 배분여부는 상호 협의 -중소기업의 경우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로 유예 가능	○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발생시 일부 배분 해야함 -단, 회사의 크로스 · 패키지 라이선싱 제3자 실시시 수익 배분여부는 상호 협의	○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 -중소기업의 경우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보상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로 유예 가능	○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

라. 기타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관련 FAQ

- 가이드라인 이해증진을 위해 각 조항 별 상세한 해설서 및 취지, 활용,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총 36개의 자주 찾는 질문(FAQ) 수록

* 한편, 대학 등 협력주체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

4. 가이드라인 보급·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

□ (1단계)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

-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및 대외공표 ('12.12.12)
 - * 지재위, 교과부, 지경부, 국과위, 공정위,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동명의로 가이드라인 공표
- 국가지식재산위원회 '공고' (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직후)
- 지경부,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산·학·연 각 소관 유관기관별 공문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('12.12월중)

□ (2단계) 확산 및 활용

- On-Line, Off-Line을 통한 가이드라인 배포 ('12.12월중)
 - *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
-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합동 설명회 개최 ('13.1월중)

□ (3단계) 보완 및 발전

- “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(가칭)”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('13. 2월중)
 - 산학연별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('13. 2월중),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각종 가이드라인 개선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저해사례를 상시 수집
 - * 의견수렴 창구(예시) : (산)대기업(KINPA), 중소기업(연구소장협의회) (학)대학 산학협력단 (연)기초기술연구회 등
 - 수집된 의견 및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·논의한 후, 필요시 경중을 고려하여 FAQ, 해설서, 계약서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보완·수정 (반기별)
 - *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적 점검·검토회의를 개최하여, 의견수렴 결과를 계속 관리

< 「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」(이하“특위”) 구성 및 운영(안)>

◇ 구성 : 관계부처 및 산학연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(15명 내외)

- * 위원장 :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관련 전문가 위촉
- * 관계부처 : 지재위, 지경부, 교과부, 국과위, 특허청 국장급
- * 산학연 : (산) 대기업, 중소기업 (학) 선도대학 및 군소대학 산학협력단장,
(연) 출연연 관계자 (기타) 지식재산 전문가 (변호사, 변리사 등)

◇ 운영개요

- (회의시기) 분기별 개최를 원칙(필요시 수시 개최)
- (운영방식) 산학연 각 창구를 통해 접수된 협약 불공정 사례 및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에 대한 개선안 마련 →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→ 차기 위원회에 보고 및 개선 → FAQ, 해설서, 계약서 등 가이드라인 보완·수정

- (사후관리) “특위” 심의결과,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FAQ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
- “산학연 협력연구 움부즈맨” 제도 도입 추진(13년 특위발족시)
 - 상기 특위 위원장을 ‘움부즈맨’으로 지정하여, 특위 등을 통해 제기된 협약 불공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, 중소·지방기업과 군소·지역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 병행 수행
-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 추진
 -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‘가이드라인’을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
 - 중장기적으로는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검토

